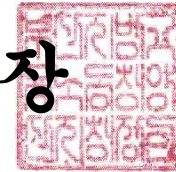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결정 사전처분통지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3년 재참여 제한결정 안내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5. 17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송달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정0정	94.12.26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결정	-1회차 상담이후 지속적인 연락과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미방문 및 연락두절	①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취업지원 종료(중단) 결정 통보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	경남 김해시 구지로136번길 15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4.5.17. ~ 2024.5.3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김해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갑숙(Tel. 055-330-64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